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6호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이 먼 거리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안상우 의원(1명)

찬 성 의 원 :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김수혜 김영록・박승엽・이정희・최정훈 의원(9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이 먼 거리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제6조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창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1]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1~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